

#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

#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4. 01. 16.

개정 2014. 05. 08.

개정 2020. 11. 19.

개정 2022. 12. 1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규약 제29조에 의거 설치하는 생활체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11. 19.>

1. 위 원 장 1인
  2. 부위원장 1인
  3. 위 원 7인
  3. 간 사 1인(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팀장)
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.

**제4조(임원의 선출방법)**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임무 및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, 연구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
4.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대한 사항
5.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6. 장애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8. 각종 생활체육 단체와의 교류 <개정 2020. 11. 19.>
9.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

**제6조(분과위원회 설치)** ① 위원회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회의소집 및 정족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장애인 체육회의 요청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,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**제8조(시행)**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)**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)**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.

## 부 칙(2014. 1. 16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14. 5. 8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0. 11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2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